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19가합5305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윤승현
변 론 종 결 2021. 3. 12.
판 결 선 고 2021. 4.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C와 피고들 사이의 2014. 10. 25.자 각 7,500만 원, 2014. 11. 21.자 각 95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최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은 2010. 4. 19. 그 대표이사 E, E의 어머니 C, E의 여동생 F의 연대보증으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G에서 합계 12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8. 주식회사 G에 위 대출금을 변제한 후, 같은 해 7. 17. D, E, C, F를 상대로는 구상금을, H(E의 여동생인 피고 A의 남편이다)을 상대로는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1008)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H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고, 2014. 12. 19. 'D, E, C,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79,195,6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다. 한편 C는 2014. 3. 4. I, J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강남구 K 대 308㎡과 그 지상 건물, L 대 185㎡(이하 '제1 부동산')를 22억 원에 매도하였다.

라. E의 여동생들인 피고들은 2014. 10. 25. M로부터 서울 강남구 N 대 332㎡와 그 지상 2층 다가구주택(이하 '제2 부동산')을 15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1.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1/2지분씩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4. 10. 25. C로부터 제1 부동산 매각대금 중 9억 2,600만 원을 증여받아 제2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증여행위는 무자력인 C의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제2 부동산 매매대금 15억 원 중 매도인의 임대차보증금채무 10억 1,000만 원, O조합대출금채무 1억 5,000만 원 합계 11억 6,000만 원은 위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3억 4,000만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1억 9,000만 원)은 피고들이 마련한 자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C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제1 부동산은 당초 E가 C 명의로 취득하여 ‘E, E의 배우자 P, 그 자녀 2명’과 ‘C, F, B’로 이루어진 각 세대가 제1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고, 제1 부동산 매도로 취득한 돈은 위 2세대가 각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7억 7,600만 원은 E에게 전액 지급되었으며, E는 2세대 생활비로 2억 5,000만 원, D를 운영하면서 친인척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5억 1,400만 원(= 처가 쪽 2억 1,400만 원 + 외삼촌 Q 1억 5,000만 원 + 피고 A의 남편 H 등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설령 E가 제1 부동산을 매도한 직후인 2014. 3. 초순경 H에게 변제한 1억 5,000만 원, 피고 B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더라도 위 행위가 있는 지 5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C가 2014. 10. 25.과 2014. 11. 21. 피고들에게 한 금전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제 이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의 기준인 ‘법률행위가 있는 날’은 2014. 10. 25.과 2014. 11. 21.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2019. 5. 1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C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의 배우자인 P는 2014. 10. 20. R은행에서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S은행에서 5,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G은행에서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사실, ② 위 R은행 자기앞수표 1억 원과 S은행 자기앞수표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이 제2 부동산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된 사실, ③ 이후 P는 2014. 11. 10. R은행에서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았는데, 위 수표는 같은 달 20. 제2 부동산 매도인에게 잔금 중 일부로 지급된 사실, ④ P는 2014. 11. 20. O조합에서 5,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그 다음날 피고 B의 O조합 계좌로 입금한 사실, ⑤ 피고 B는 2014. 11. 21. 제2 부동산 매매 관련 대출금채무승계로 O조합에서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과 위 수표입금액 5,000만 원의 합계 2억 원을 제2 부동산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갑 제3호증의 1, 3, 제10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제1 부동산에는 G은행의 2004. 9. 23.자 근저당권(채무자 C,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2007. 5. 14.자 근저당권(채무자 D,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2007. 7. 10.자 근저당권(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2009. 6. 16.자 근저당권(채무자 D,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2013. 12. 20.자 근저당권(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각 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3. 4.과 5. 이틀 동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 ② 피고 B는 2014. 3. 3. 서울 강남구 T건물, U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에 임차하여 임대인에게 1년 치 차임 9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위 U호에서 C와 함께 생활한 사실, ③ E는 2014. 3. 4. 피고 B 명의로 서울 강남구 V, 1층 주택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에 임차하고, 그 임대인에게 1년 치 차임 1,6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한 사실, ④ E는 2014. 3. 5. D를 운영하면서 장모인 W 명의로 차용한 합계 약 7,400만 원, X 명의로 차용한 합계 약 1억 1,000만 원 등을 변제하였고, 같은 해 3. 10. Y의 계좌로 G은행 자기앞수표 2,000만 원, Z의 계좌로 S은행 자기앞수표 1,000만 원을 입금하는 한편, 그 다음날인 11. AA에게 약 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⑤ P는 O조합에서 2014. 11. 6.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같은 해 11. 10.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을 발행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제1 부동산의 매도대금의 사용주체와 그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다가 원고는 제1 부동산 매매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고, 선행소송에서도 제1 부동산의 매도대금 일부를 지급받은 H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등을 취하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1 부동산의 매도대금은 E가 2014. 3. 4. C로부터 곧바로 증여 받아 전적으로 관리, 처분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고, C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P를 통해 피고들에게 위 매도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덕식, 판사 명선아, 판사 이유섭